

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

소관부서 : 일자리정책과

제정 2005 · 7 · 27 조례 제 577호
개정 2006 · 11 · 16 조례 제 640호
(이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)
개정 2007 · 11 · 20 조례 제 690호
일부개정 2014 · 10 · 15 조례 제 1062호
(이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)
일부개정 2014 · 12 · 31 조례 제 1092호
일부개정 2019 · 1 · 1 조례 제 1464호
(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일부개정 2019 · 9 · 30 조례 제 1529호
일부개정 2023 · 3 · 6 조례 제 1900호
(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4 · 12 · 31>

[전문개정 2007 · 11 · 20]

제2조(적용범위) 시장정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서 준용하도록 한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, 「주택법」, 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 <개정 2007 · 11 · 20, 2014 · 12 · 31>

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 및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7 · 11 · 20, 2014 · 12 · 31>

1. “시장정비사업”(이하 “정비사업”이라 한다)이라 함은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“시장정비 사업시행구역”(이하 “사업시행구역”이라 한다)에서 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의한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포함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장을 재개발 · 재건축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.
2. “토지 등”이라 함은 사업시행구역에 속하는 토지나 건축물 모두를 말한다.
3. “시장정비사업조합”(이하 “조합”이라 한다)이라 함은 법 제2조제9호에 의하여 시

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

장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을 말한다.

4. “사업시행자”라 함은 범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시장정비 사업 시행구역에서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법 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소유자·조합·지방자치단체·지방공사·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말한다.
5. “집합건물”이라 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물로서 외관상 1동의 건축물이나 내부적으로는 각기 구조상 구분되어 있고 그 구조상 구분되어 있는 부분이 각기 소유권이 다른 형태로 되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. 이 경우 건축물의 대지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는 불문한다.
6. “사업추진계획승인 추천 신청자”(이하 “신청인”이라 한다)라 함은 법 제33조제2항 각 목에 의한 개인 또는 위원회·조합·법인 등의 대표자를 말한다.

제4조(사업추진계획승인 선정대상)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계획승인 선정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7·11·20, 2014·12·31>

1. 법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말함
 - 가. 이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추진계획에 시장정비사업 시행대상으로 반영한 지역
 - 나. 빈 점포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전통시장으로서 정상적으로 시장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지역
2. 법 제2조제1호나목 및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시장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말함
 - 가. 노후·불량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
 - 나. 무허가건축물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20퍼센트 이상인 지역

[제목개정 2014·12·31]

제5조(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) ① 시장은 신청인이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사업추진계획 승인 추천신청 서류에 대하여 관계법령, 사업의 타당성, 입점상인

대책 및 이해관계의 조정 등 사업계획의 전반적인 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검토 및 조정하기 위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07·11·20, 2014·12·31>

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4·12·31>

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경제문화국장이 된다. <개정 2006·11·16, 2019·1·1, 2023·3·6>

④ 위원은 시의회 의원, 유관기관·단체의장과 시장정비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사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되, 금품, 향응수수, 배임, 횡령 등 부패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.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. <개정 2014·12·31>

⑤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 <신설 2014·12·31>

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. <개정 2014·12·31>

[제목개정 2007·11·20, 2019·9·30]

제6조(사업추진계획승인 추천 등) ① 시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추천 신청서류를 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부의하기 전에 미리 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사업계획(이하 “사업계획”이라 한다)을 공고하고, 공청회 또는 서면을 이용한 의견조회 등을 통하여 사업추진계획승인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·11·20, 2014·12·31>

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자 등이 제출한 의견을 정리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과 함께 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조정(이하 “심의”라 한다)을 거쳐 사업추진계획 승인을 추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·12·31>

③ 범 제45조 및 영 제2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인접지역을 사업추진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범위는 당초의 시장부지 면적에 해당하는 규모의 50퍼센트 이상의 면적을 초과하여 편입할 수 없다. <개정 2007·11·20, 2014·12·31>

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

[제목개정 2014 · 12 · 31]

제6조의2(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) 토지 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또는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, 권리내역, 동의철회 사유 등을 기재한 서류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권리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토지 등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포함)를 첨부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9 · 9 · 30]

제7조(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) ① 법 제32조제1항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(이하 “추진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는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제13조제2항 ·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07 · 1 · 20, 2014 · 12 · 31>

② 추진위원회에서 행하여지는 업무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는 등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토지 등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 · 12 · 31>

③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 · 12 · 31>

1. 토지 등 소유자의 명부
2.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
3.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
4.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

[제목개정 2014 · 12 · 31]

제8조(추진위원회의 해산 및 권리의무 승계) 추진위원회는 조합의 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조합에 인계하여야 하며, 추진위원회에서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한다. <개정 2014 · 12 · 31>

[제목개정 2014 · 12 · 31]

제9조(조합의 설립인가 등) ①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아

야 한다. <개정 2007·11·20>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함에 있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. <개정 2007·11·20>

③ 조합 설립 인가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·9·30>

1. 조합정관

2. 조합원 명부(조합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첨부)

3. 토지 등의 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

4. 창립총회 회의록(총회참석자 연명부 포함)

5. 조합장 선임동의서(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)

6. 토지·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동의서

7. 창립총회에서 임원·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

8. 주택건설예정세대수,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·지목 및 등기명의자, 도시관리계획
상의 용도지역,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

9. 건축계획(건축연면적, 지하 층 지상 층, 판매시설 m^2 , 주거시설 m^2 , 업무시설 m^2 , 기
타시설 m^2), 매장면적(도소매업 매장 m^2 , 용역업 매장 m^2 , 공동사용시설 면적 m^2)

④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정비사업조합 설립(변경)인가 신청 사항에 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을 준용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도시 및 건축 관련 부서
와 협의하여야 한다.

제10조(사업의 시행)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추진계획 승인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,
조합설립인가·도시관리계획의 결정·건축허가·교통영향평가 등 관련법에 의한 절
차를 이행하고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·12·31>

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최종 사업계
획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추진계획과 다를 경우 그 계획을 변경하여 반영하
는 등 정비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·11·20, 2014·
12·31>

③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,

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

「주택법」 및 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
- 제11조(정비사업의 자금지원)** ①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추진계획이 승인된 경우 시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의 용자를 추천할 수 있다. <개정 2007·11·20, 2014·12·31>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자추천은 「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14·12·31>

제12조 삭제 <2007·11·20>

- 제13조(보고 및 관리 등)**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매년 반기(1월, 7월)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사업시행자는 정비 사업을 완료한 후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8조·제12조 및 「같은 법 시행규칙」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과 관리자 신고를 필한 후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증 및 대규모점포 관리자 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정비사업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완료보고를 이행한 경우 당해 시장을 「유통산업발전법」의 관계 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(시장)로 관리하여야 한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4·12·31>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6·11·16 조례 제640호,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2007·11·20 조례 제690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4·10·15 조례 제1062호, 이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4 · 12 · 31 조례 제1092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9 · 1 · 1 조례 제1464호,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⑯ 까지 생략

⑰ 「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3항 중 “산업환경국장”을 “기업환경국장”으로 한다.

⑲ 부터 ⑳ 까지 생략

부칙 <2019 · 9 · 30 조례 제1529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3 · 3 · 6 조례 제1900호,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⑯ 까지 생략

⑰ 「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3항 중 “기업환경국장”을 “경제문화국장”으로 한다.

⑱ 부터 ⑳ 까지 생략

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

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14·10·15>

|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서(예시) | | | | | 처리기한 60일 |
|---|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신청인 | 사업구분 | | <input type="checkbox"/> 시장정비사업 | | |
| | 대표자 | 추진위원회의 명칭 | 조합설립추진위원회(가칭) | | |
| | | 성명 | | 생년월일 | |
| 추진위원회설립내역 | 주소 | (전화) - | | | |
| | 설립목적 | 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설립 | | | |
| |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| (전화) - | | | |
| | 구역명칭 | | 구역면적 | (m ²) | |
| 사업시행 예정구역 | 위치 | | | | |
| 동의사항 | 토지 등 소유자수 | (토지소유자 : (건축물소유자 : (지상권자 : (주택 및 토지소유자 : (부대 · 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: 인) 인) 인) 인) 인) | 인) 인) 인) 인) 인) | 동의율 | % (동의자수 /토지 등 소유자수) |
| <p>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3조제2항 및 「같은 법 시행규칙」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을 신청합니다.</p> | | | | | |
| | | | 신청인 대표 | 년 월 일 (서명 또는 인) | |
| 이 천 시 장 귀하 | | | | | |
| <p>※ 첨부서류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.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.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4.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| | | | | 수수료 없음 |

[별지 제2호서식] <개정 2019·9·30>

| 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(변경) 인가신청서 (제9조제3항 관련) | | | | | | 처리기한 60일 | | | | |
|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--|----|
| 신청인 | 조합명칭 | | 시장정비사업조합(가칭) | | | | | | | |
| | 대표자 | 성명 | | 생년월일 | | | | | | |
| | | 주소 | (전화) - | | | | | | | |
| 추진위원회설립내역 | 설립목적 | 시장정비사업의 시행 | | | | | | | | |
| |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| (전화) - | | | | | | | | |
| | 사업시행 구역 | 구역명칭 | 구역 | 구역면적 | (m ²) | | | | | |
| | | 위치 | | | | | | | | |
| 조합원수 | 인 | 사업시행인가 신청예정시기 | 사업시행구역지정일 (년 월 일)부터 () 이내 | | | | | | | |
| 동의사항 | 토지 등 소유자수 | 총수 (토지소유자: (건축물소유자 : (지상권자 : | 인 (인) (인) (인) | 동의율 | %(동의자수 /토지 등 소유자수) | | | | | |
|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32조제1항과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(변경) 인가를 신청합니다. | | | | | | 년 신청인 대표 (서명 또는 인) | 월 | 일 | | |
| 이 천 시 장 귀하 | | | | | | | | | | |
| ※ 첨부서류 <table border="1" style="float: right;"> <tr> <td>수수료</td> </tr> <tr> <td>없음</td> </tr> </table> | | | | | | | | | 수수료 | 없음 |
| 수수료 | | | | | | | | | | |
| 없음 | | | | | | | | | | |
| 1. 설립인가의 경우 <table border="1" style="float: right;"> <tr> <td>수수료</td> </tr> <tr> <td>없음</td> </tr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조합정관 나. 조합원 명부(조합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) 다.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라. 창립총회 회의록(총회참석자 연명부 포함) 마. 조합장 선임동의서(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) 바. 토지·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동의서 사. 창립총회에서 임원·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아. 주택건설예정세대수, 건축계획, 주택예정지의 지번·지목 및 등기명의자, 도시관리계획 상의 용도지역,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자. 그 밖에 특별시·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서류 | | | | | | | | | 수수료 | 없음 |
| 수수료 | | | | | | | | | | |
| 없음 | | | | | | | | | | |
| 2. 변경인가의 경우 :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| | | | | | | | | | |